

의안 번호	2445	[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6. 30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4.(월)

2. 제안이유

-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구청장 책무 및 공직자 의무
(안 제3조 및 제4조)
-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(안 제6조 및 제7조)
- 정기 청렴교육 및 반부패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청렴도 조사 실시 및 청렴포상 등(안 제11조 및 제12조)

4. 근거법규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7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, 제5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2조,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 의무,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, 정기 청렴 교육 및 청렴도 조사 실시, 청렴 포상 등이며,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
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제53조(청렴의 의무)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(謝禮)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
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무직”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·의회사무국·보건소·문화의전당·구립도서관·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규칙, 규정,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- ②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, 운동선수 등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.